제 18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5 조에 의거 제 18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**일 시** : 2025 년 3 월 24 일(월요일) 오전 9 시
2. **장 소** : 천안사업장 강당 (충남 천안시 서북구 3 공단 3 로 50)
3. **회의 목적 사항**
   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
 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   나. 부의안건
   1) 제 1 호 의안 : 제 18 기(2024.1.1.~2024.12.31.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
   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
   (현금배당 : 1 주당 250 원)
   2) 제 2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   3) 제 3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(신무 감사 재선임)
   4) 제 4 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  5) 제 5 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   6) 제 6 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및 부여의 건

4. **경영참고사항 비치**
   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본점과, 명의개서대행회사(국민은행 증권대행부)에 비치하였으며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**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**
  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   - 직접행사 : 신분증
   -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 신분증
   ※ 위임장 다운로드 : www.hanamts.com → 투자정보 → 공고

6. **전자투표에 관한 사항**
   당사는 제 14 기 주주총회부터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(상법 제 368 조의 4)를 도입하였습니다.
   주주총회에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귀중한

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가.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: https://vote.samsungpop.com

나. 전자투표 행사 기간 : 2025 년 3 월 14 일 오전 9 시 ~ 2025 년 3 월 23 일 오후 5 시
- 기간 중 24 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 시까지만 가능)

다.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, 카카오페이, 휴대폰인증을 통해 주주 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

라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(삼성증권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약관 제 13 조제 2 항)

2025 년 3 월 7 일

하나머티리얼즈 주식회사

대표이사 김 현 주 (직인생략)

문의전화 : 본사 재무그룹 (041-410-1012)

[별첨1]

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案)	개정이유
제 21 조의 2(사채 발행의 위임) 이사회는 대표이사(사장)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	**제 21 조의 2(사채 발행의 위임)**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.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.	문구수정
제 24 조(소집권자)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**대표이사(사장)**가 소집한다. ② **대표이사(사장)**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**제 24 조(소집권자)**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**대표이사**가 소집한다. ② **대표이사**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문구수정
제 27 조(의장)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**대표이사(사장)**로 한다. ② **대표이사(사장)**의 유고시에는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**제 27 조(의장)**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**대표이사**로 한다. ② **대표이사**의 유고시에는 제 3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문구수정
제 38 조(이사의 직무)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**대표이사(사장)**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**대표이사(사장)**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	**제 38 조(이사의 직무)**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는 **대표이사**를 보좌하고,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, **대표이사**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	문구수정
제 41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② 이사회는 **대표이사(사장)**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**3 일전**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③~⑥ <생략>	**제 41 조(이사회의 구성과 소집)**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 ② 이사회는 **대표이사**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**7 일전**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③~⑥ <현행과 같음>	문구수정 및 이사회 규정과 일치
<신설>	**제44조(위원회)**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 1. ESG위원회 2. 사외이사추천위원회 3. 내부거래위원회	정관 내 위원회 신설

	4. 보상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, 권한,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 41 조 내지 제 4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
제 44 조~제 45 조 <생략>	**제 45 조~제 46 조** <현행과 같음>	조 체하
제 46 조(대표이사의 직무) **대표이사(사장)**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	**제 47 조(대표이사의 직무)** **대표이사**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	조 체하 및 문구수정
제 47 조~제 48 조 <생략>	**제 48 조~제 49 조** <현행과 같음>	조 체하
제 49 조(감사의 임기와 보선) ① <생략>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**제 47 조**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**제 50 조(감사의 임기와 보선)** ① <현행과 같음>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. 그러나 정관 **제 48 조**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조 체하 및 문구수정
제 50 조~제 53 조 <생략>	**제 51 조~제 54 조** <현행과 같음>	조 체하
제 54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 ① **대표이사(사장)**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**대표이사(사장)**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**대표이사(사장)**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④ **대표이사(사장)**는 제 1 항의 서류 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⑤ **대표이사(사장)**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	**제 55 조(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)** ① **대표이사**는 상법 제 447 조 및 제 447 조의 2 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② **대표이사**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 주간 전에 제 1 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**대표이사**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 ④ **대표이사**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,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 ⑤ **대표이사**는 상법 제 447 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제 447 조의 2 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	조 체하 및 문구수정

⑥~⑦ <생략> ⑧ 대표이사(사장)는 제 5 항의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	⑥~⑦ <현행과 같음> ⑧ 대표이사는 제 5 항 또는 제 6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.	
제 55 조~제 56 조 <생략>	제 56 조~제 57 조 <현행과 같음>	조 체하
제 57 조(이익배당) ①~③ <생략>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 54 조 제 6 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	제 58 조(이익배당) ①~③ <현행과 같음>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 55 조 제 6 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.	조 체하 및 문구수정
제 58 조(중간배당) <생략>	제 59 조(중간배당) <현행과 같음>	조 체하
부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4 년 0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 제 2 조(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) 제 48 조 제 3 항·제 5 항의 개정 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 다)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 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. 제 3 조(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) 제 48 조 제 4 항·제 5 항의 개정 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 다)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 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	부칙 제 1 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25 년 03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 <삭제>	정관시행일 변경 및 부칙 삭제

[별첨 2]

감사 선임의 건(안)

가. 후보자의 성명・생년월일・추천인・최대주주와의 관계・사외이사후보자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신무	1960.10.03	-	이사회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・세부경력・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 성명	주된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의 최근 3 년간 거래내역
		기간	내용	
신무	삼지회계법인 공인회계사	1985~1987 1988~1994 1994~2000 2006~2011 2011~현재	- 삼성전자(기흥) 경리과 - 산은캐피탈(투자기획) - 덕인(관리총괄) - 세원합동회계사무소 - 삼지회계법인	없음

다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후보자성명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사유 유무
신무	해당 사항 없음		

[별첨 3]

주식매수선택권 취소 및 부여의 건

가.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

- 핵심인력의 책임경영과 동기부여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도모

나.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 및 부여 받을 자의 성명

성명	직급	사내이사 여부	부여일	취소할 주식		부여할 주식	
				주식의종류	주식수	주식의종류	주식수
김현주	대표이사	사내이사	24.03.08	보통주	100,000 주	보통주	100,000 주
김순영	전무	사내이사	21.03.22	보통주	20,000 주	보통주	20,000 주
양도환	전무	-	21.03.22	보통주	20,000 주	보통주	20,000 주
류흥선	관계사 임원	-	21.03.22	보통주	20,000 주	보통주	20,000 주
김영석	상무	-	21.03.22	보통주	15,000 주	보통주	15,000 주
강동호	전무	-	23.02.03	보통주	40,000 주	보통주	40,000 주
박상은	이사 대우	-	23.11.09	보통주	7,000 주	보통주	7,000 주
총 7 명				보통주	총 222,000 주	보통주	총 222,000 주

다.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,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, 그 행사 가격, 행사기간 및 기타 조건의 개요

구분	내용
부여방법	신주발행 교부, 자기주식 교부, 차액보상
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	- 종류 : 보통주 - 수량 : 222,000 주

행사가격 및 행사기간	- 행사가격 산정기준 : 상법 340 조 2 제 4 항에 따라 주주총회일 직전 2 개월, 1 개월, 1 주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금액 - 행사기간 : 주주총회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 년 이내(2027 년 03 월 24 일부터 2032 년 03 월 24 일까지)
기타조건의 개요	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 법률, 정관,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